【 주간 포커스 】

보험가격 산출 시 성별 정보의 활용

김동겸 선임연구원

계약자의 위험요인을 반영한 보험가격 산정은 민영보험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. 그러나 최근 유럽사법재판소(ECJ)는 판결을 통해 2012년 12월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 산정 시 성별 정보의 반영을 금지하였다. 이러한 ECJ의 판결은 보험료 재분배, 보험회사 상품공급 방식, 시장 효율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. 보험료 산출 시 남·녀 단일률을 적용할 경우 가격 산정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수익성 관리를 위해 상품별 다양한 위험 요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.

□ 보험상품에 대한 가격산출 시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위험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계약자의 연령, 성별 등을 고려

o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성, 연령 등에 따라 사고발생위험, 사망위험, 생존위험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있음.

-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기대수명, 건강상태, 사고발생률, 식습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, 이러한 차이는 연령별로도 상이하게 나타남.

□ 지난 3월 1일 유럽사법재판소(ECJ)는 "Test-Achats" 소송[1]에 대한 판결을 통해, 2012년 12월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 산정 시 성별 정보 반영을 금지하였음.

o ECJ의 판결은 "계리적으로 공평(actuarially equatable)한가"의 관점보다는 "도덕적으로 공정(morally fair)한가"에 초점을 맞추어 성별에 따른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차등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임.

---

1) 유럽공동체위원회는 EU Gender Directive(2004)를 통해 2007년 12월 2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 및 보험금에 대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명시하였으나, 리스크 평가 시 성별 정보가 계리적·통계적 자료를 통해 중요한 요인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보험료 차등을 허용하는 면책조항을 두었음. 그러나 벨기에의 시민단체인 Test-Achats 에서는 이 같은 면책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.

- 계리적 관점에서는 동일한 리스크에 대해 동일하게 취급하나, 상이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르게 취급하여 서로 다른 리스크를 보유한 집단에 대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있으나,
-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등을 반대하고 있는 측에서는 보험료가 계리적 관점에서 공정하더라도, 성, 연령 등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요인을 기초로 보험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불공정(unfair)하다는 견해를 피력[2)]

□ ECJ의 결정에 따라 향후 남·녀 단일요율(unisex rate)이 적용될 경우 일차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연령별로 보험료 재분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.

o 보험료 산출에 있어 성별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동일집단 내에서 낮은 리스크를 보유한 성의 경우 높은 리스크를 보유한 성에 대한 상호보조(cross-subsidy) 효과가 발생하여 보험료가 인상될 것임.

- 성별 정보 미반영 시 상품 별, 연령대 별 보험료 인상·인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나,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여성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반면,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남성의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[3)].

<그림 1> 성별 정보 미반영 시 보험료 변화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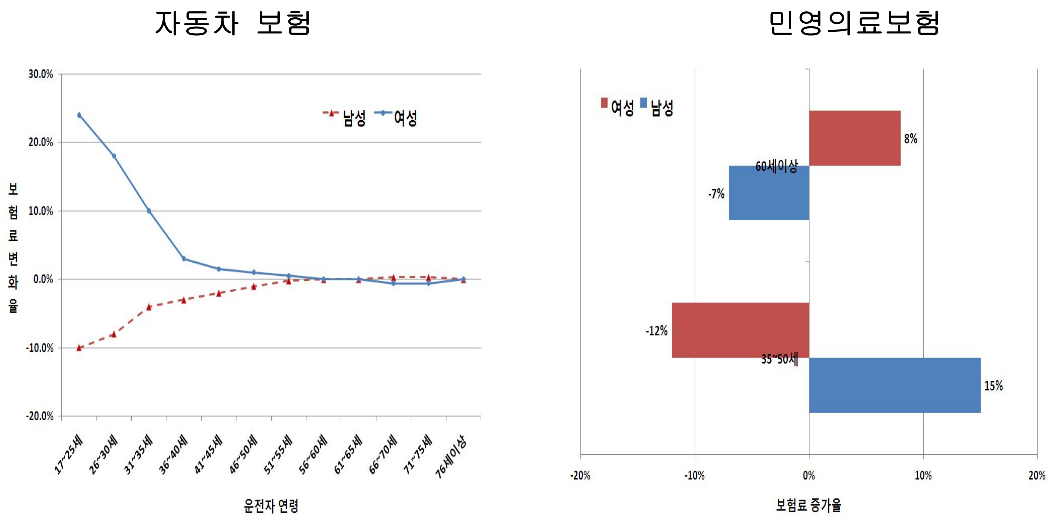

자료 : ABI(2010), The Use of Gender in Insurance Pricing

2) 2000년에 재정된 평등지위보장법(Equal Status Act)에서는 성, 혼인상태, 성적지향, 종교, 연령, 유랑공동체, 장애 등 9가지 부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, ECJ의 최근 판결로 향후 계약자 연령, 장애 상태 등의 정보 반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.
3) Oxera(2010), The use of gender in insurance pricing: unfair discrimination?

- ABI(2010)는 성별 정보 사용금지로 인하여 25세 이하 여성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25% 가량 상승하나, 동일 연령대의 남성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10%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음.

□ **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료 산정 시 성별 정보 반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가격결정 방식, 상품공급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.**

o 첫째, 보험회사는 성별 정보를 제외한 연령, 직업 등 타 요인에 대해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거나, 성별을 대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발굴하여 가격산정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.
  - 예를 들어, 성별에 대한 대용변수로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직업, 차량의 색, 생명보험의 경우 키, 몸무게, 의료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, 이들 요인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 및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

o 둘째, 상품공급 측면에서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 마케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.
  -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과정을 통해 남·여 구성비율을 조정하거나, 자사에 유리한 계약집단만을 인수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

□ **한편, 남·녀 단일요율 적용에 따른 계층별 보험료 인상·인하 효과의 차이로 계약집단별 행동변화를 유발하여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**

o 리스크 유형별로 보험료 차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될 경우, 상호보조가 발생하게 되어 낮은 리스크를 보유한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o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거나 보장이 높게 설정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 우려

□ **보험료 산출 시 남·녀 단일률을 적용할 경우 가격산정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, 보험회사는 수익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.**

o 보험가격 산출모형에서 성별 정보를 배제할 경우 모형의 정확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는 수익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상품별 실제 리스크 차이가 반영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. KiRi